

명예학사학위수여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본“대학교”라 한다) 명예학사학위수여에 관한 제반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 및 자격) 명예학사학위는 본 대학교에 학생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사회와 국가적으로 공헌이 현저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히 그 공이 인정될 경우 본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 3 조 (학위종별) 명예학사학위의 종별은 명예학사학위 수여대상자의 재학당시 학과의 학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본 대학교 학생이 아닐경우 교무위원회에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
제 4 조 (수여절차) ①명예학사학위의 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여부를 결정한다.

②명예학사학위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 5 조 (학적부기록) 학적부에 명예학사학위의 학위명과 학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학위취소) 명예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상하는 경우,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7 조 (세부사항)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여된 명예학사학위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